

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86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27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중국은행 서울지점
2. 인가업무  
가. 1-2-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
3. 인가조건  
가.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
4. 인가일 : 2016. 9. 21.

※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